

임상실습협약서

2023. 12. 18

제 1조(협약목적) 본 협약은 대전 한일병원(이하 '실습기관'이라 함)과 한남대학교 간호학과(이하 '학교'라 함)의 현장실습에 있어 상호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2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단, 기간 만료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 3조(상호협약조정) 실습부서, 실습인원,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습기관과 학교가 상호협의 하여 정한 바에 따르며, 년 1회 이상의 정기협의회를 통해 실습에 대한 협조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.

제 4조(기관의 의무·권리) 실습기관은 효율적인 학생 실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.

1.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의 사용을 허용하며 원활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.
2.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에게 실습 기관 운영 방침과 제반 규정을 교육하고, 학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학생의 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.
3. 실습기관에서의 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해 학생에게 교육한다.
4. 실습기관의 교육담당 간호사는 실습지침서와 협의된 사항에 준하여 학생을 지도하며, 실습에 대한 학생을 평가하여 학교에 통보한다

제 5조(학교의 의무·권리) 학교는 임상실습교수의 책임하에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운영 방침과 규정 및 제반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1. 학생의 실습지도는 학교의 임상실습교수의 책임하에 시행되며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으로 파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.



2. 학교는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, 실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은 학생에게 공지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.
3. 학교는 원활한 실습 운영을 위해 학교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의 교육담당 간호사를 실습지도자로 발령하고, 실습기관과 협의된 실습비를 지급해야 한다.
4. 학교는 실습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감염관리, 학생 및 환자안전, 인권 보호, 병원 규정을 교육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도한다.

제 6조 (협의회) 실습교육에 있어 원활한 협력을 위해 실습기관과 학교의 실습관련자는 년 1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7조(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약에 따른다.

본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병원과 학교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12. 18.

대전한일병원

한남대학교

대표이사: 윤진순 (서명)

총장: 이광섭 (서명)

